

**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
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**
(권기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. 8. 18

발 의 자 : 권기만 · 길윤옥 · 김도문
박교상 · 박세채 · 윤서규
이갑선 · 임춘구 · 정근수
(9인)

1. 제 안 이 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의회소관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등 3건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일부 문구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일괄 정비코자함.

2. 주 요 내 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 정비(안 제2조 · 제3조)

3. 참 고 사 항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

구미시의회 규칙 제 호

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)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”로 한다.

제2조(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)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7조”로 한다.

제3조(구미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) 구미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”을 “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“정기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찬성자(발의자)서명명부

(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
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)

[illegible]